



AI 방역실시요령

# AI 방역실시요령 개정 주요내용

**양**계인이라면 AI(조류인플루엔자)의 무서움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AI는 2003년말 태국·베트남 등 동남아시아와 중국에서 시작하여 우리나라에도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 이후 2005년 러시아·몽고에서 확인된 이후 시베리아 철새의 동선(flyway)을 따라 서쪽으로 이동하여 2005년 말부터 2006년 사이에 유럽과 아프리카로 급속히 확산되었으



김 준 걸  
농림부 가축방역과

며, 현재까지 사육하는 가금에서 발생이 확인된 국가만 총 50개국이고 야생조류에서만 발생이 확인된 국가도 10여 개국에 이른다. 이들 국가중에서는 청정국 지위를 회복한 곳도 있으나 AI는 발생지역이나 발생 가능지역을 구분하는 것이 무의미할 정도로 광범위하게 확산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인도네시아·베트남·이집트 등 12개 국가에서는 인체 감염에 의한 피해도 발생하여 2007년 9월 현재 WHO는 감염자 328명에 사망자 200명으로 공식 집계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3년말에서 2004년초까지 홍역을 한차례 치른 후 그간의 경험을 정리하여 AI 방역실시요령을 재정비하였고, 이에 기초하여 현장에서 수행해야 할 행동지침인 AI 긴급행동지침(SOP)을 마련하여 발생시를 대비해 왔다. 또한, 겨울철 북방에서 날아오는 철새가 주요한 유입원으로 추정된다는 역학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매년 동절기(11·2월)에 이에 대비한

특별방역대책을 추진해 오고 있다.

2006년 유럽을 휩쓸던 AI는 2006년말에 또 다시 우리나라에 유입되어 익산·김제·아산·천안·안성의 7개 발생농장 반경 3km 이내에 사육하는 280만 마리의 닭·오리를 살처분해야 하는 큰 피해를 입혔으며, 살처분 보상금을 포함하여 총 588억원에 달하는 국가재정이 투입되는 경제적 피해도 입혔다. 그러나 2003년 발생시와는 달리 정형화된 방역실시요령과 SOP에 따라 체계적인 방역을 실시하여 그 피해는 19건이 발생하여 530만 마리를



살처분함으로써 1,531억원의 피해를 입힌 2003년 당시와 비교하여 절반 이하로 줄일 수 있었다.

농림부는 2006년말 발생시 적용한 방역실시요령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유관단체의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쳐 2007년 9월 개정된 방역실시요령을 고시하였다. AI 방역실시요령은 크게 AI 발생 이전의 예방활동, 의사환축 발생시의 방역요령, AI 발생으로 확인되었을 경우의 방역요령 및 후속조치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고에서는 AI 발생으로 확인되었을 경우의 방역요령과 후속조치에 관한 내용을 중심으로 내용을 요약하여 소개하고자 한다.

AI 발생이 확인되면 방역요령과 후속조치는 다음과 같은 4단계로 구분된다.

## 1. 발생지를 중심으로 이동제한 지역을 설정한다

AI 감염이 확인된 농장을 중심으로 위험지역(반경 3km)과 경계지역(반경 3~10km)을 설정하여 30일 이상 닭·오리 및 관련물품에 대한 이동제한 명령을 하고 주요 도로에 이동통제초소를 설치하여 국방부·경찰청 등의 지원을 받아 이동을 통제하게 된다. AI가 돼지에 감염될 경우 인체감염이 가능한 바이러스로 변이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오염지역(반경 500m)내 돼지도 이동제한 대상에 포함시켰다.

## 2. 감염원 제거를 위한 살처분 및 소독을 실시한다

AI 감염이 확인된 농장의 가금류 등을 신속히 살처분·폐기하게 되며, CO<sub>2</sub> 가스 등을 이용해 안락사 후 환경오염 및 전파우려가 없는 방법으로 매몰한다.

AI가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살처분 범위를 확대하는 경우 반경 500m 이내 농장(돼지 포함)



및 역학적 관련농장의 경우는 검역원장의 자문을 받아 시장·군수가 결정하고, 불가피하게 반경 3km까지 살처분을 확대해야 한다는 검역원장의 건의가 있는 경우 필요에 따라 가축방역협의회의 자문을 받아 농림부장관이 이를 결정하게 된다. 오염지역내 돼지에 대해서는 그간의 감염여부 조사 결과와 동물보호단체 등의 의견을 감안하여 검사 결과 감염이 확인되거나 역학적으로 관련성이 높을 경우에 한하여 살처분을 고려하도록 하였고 야생 개·고양이는 살처분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살처분 현장투입 인력에 대해서는 방역복·마스크·고글 등 개인보호장비를 착용토록 하고 질병관리본부의 협조를 얻어 백신·항바이러스제 투여 등 인체감염 방지조치를 취한다. 살처분 조치 이후에 해당지역 축사, 가축, 출입차량 등에 대한 철저한 소독을 실시한다.

### 3. 이동제한지역 사육 가금에 대한 확인검사를 실시한다

AI 최대 잠복기(21일) 등을 감안하여 감염원 제거를 위한 살처분 조치가 끝난 날부터 30일이 지난 후 이동제한지역 내의 닭·오리에 대한 확인검사를 실시하게 된다. 임상검사, 혈청검사 및 분변검사 등 다양한 검사를 통해 이상 유무를 확인한다.

### 4. 이동제한을 해제하고 가축 재입식을 허용한다

살처분 조치가 살처분이 끝난 날부터 일정기간이 지나고 분변검사 및 입식시험을 거쳐 이상이 없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가축 재입식을 허용한다.

- 분변을 매몰·소독할 경우  
: 살처분 후 30일 경과
  - 분변을 외부반출할 경우  
: 살처분 후 60일 경과
- 

또한, 야생동물에서 AI 감염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반경 10km 이내 지역에 대해 시료채취일을 기준으로 30일간 경계지역에 준한 방역조치 적용하도록 하였다.

농림부는 개정된 AI 방역실시요령을 토대로 그간 현장지도 및 역학조사 과정에서 도출된 미비점을 모두 보완하여 AI 긴급행동지침(SOP)을 개선하고, AI에 대한 대비·대응체계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 AI 방역실시요령은 농림부 홈페이지([www.maf.go.kr](http://www.maf.go.kr))의 “정보농장-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란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양계](#)